

【별지 제6호 서식】(제11조와 관련)

파트타임강사 위촉계약서

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(이하 “센터”)와 파트타임강사 _ (이하 “강사”)은 다음과 같이 파트타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며,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.

1. 강사 인적사항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
----	------	----	-----

2. 위촉기간 및 업무

- 위촉기간: 2024년 01월 01일 ~ 2024년 12월 31일
- 위촉업무
 - 교육프로그램에 등록된 수강생에 대한 실기 및 이론 교육
 - 교재 및 교구 준비, 교육장 관리 및 정리정돈 등 환경미화
- 강의시간: 강의 시간표에 따름(수업시간 간 공백기간은 휴게시간으로 함)
 - ※ 단, 휴강으로 인한 보강 및 수업연장은 별도로 함
- 강의장소: 한마음스포츠센터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)
 - 강의시간과 장소 등은 사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

3. 강사료: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함

- 매월 원천징수액 공제 후 강사에게 지정된 계좌로 7 일에 지급
- ※ 강사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강사료 지급일 전 평일에 지급

4. 준수사항 및 비밀유지

-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이행치 못한 경우에는 보강수업 등으로 수강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강사는 강습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준비운동, 정리운동 등 안전지식 및 안전의식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- 강사의 강의 중단 의사표시는 강의 중단 30일 전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강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업무처리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센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, 누설, 공개할 수 없다.
- 강사는 업무 수행함에 있어 금품수수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청렴의무를 다해야 한다.

5. 계약해지

- 다음 각 호에 하나의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) 강사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 - 2) 강사가 위촉될 시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는 경우
 - 3) 강의시간을 지키지 않거나, 무단 휴강 등으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
 - 4) 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
 - 5) 사업종료 등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6) 강사가 위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7) 개인사업장에 관한 소개나 연결 또는 물품 판매나 광고를 하였을 경우
 - 8) 강사가 성범죄, 아동학대 등 센터 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
 - 9) 강사가 형사상 기소 등으로 센터의 위신을 저해하였을 경우
 - 10) 기타 센터의 이미지 및 공신력을 저해하였을 경우
 - 11) 준수사항 및 비밀유지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위촉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

9. 기타사항

-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용하며, 위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·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.
- 계약서 작성 시 한마음스포츠센터 재해·재난 안전교육 실시 (☒ 받음, ☐ 안받음)

2023년 01월 02일
2024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(좌동)	[주소]
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	
	강 사

※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.

강 사: _____ 인)